

상주시 공고 제 2023 - 333호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상주시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의지 표명에 따라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이 주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당초: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 변경: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공공기관 등'의 정의 구체화
- 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관련 세부사항 수정
- 라.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마.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바. 부칙개정: 유사 조례인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는 내용 반영 후 폐지

3.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투자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기간: 2023. 2. 21. ~ 3. 13.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cjk9911@korea.kr
 - 2) 주소 : (우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 3) 전화 : 054-537-7403
 - 4) 팩스 : 054-537-6259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전화 : 054-537-74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